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를 재정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확대(안 제7조)
-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, 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,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고,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각 호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 - 안 제11조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였음.
- 검토결과
  - 「지방공무원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임.
  - 또한,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으로 소속공무원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,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를 재정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확대(안 제7조)
- 나.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, 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, 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2021년도 예산편성
- 다. 협의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 - 2)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  - 4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0. 11. 2. ~ 11. 5./ 3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단체보장보험 가입
- 8.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등 지원
- 9. 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- 10.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제3항제2호 중 “「**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**」”을 “「**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**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</u> <u>검진 지원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단체보장보험 가입</u></p> <p>8. <u>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등</u> <u>지원</u></p> <p>9. <u>소속공무원의 난임 진단에 의한</u> <u>시술비 지원</u></p> <p>10. <u>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<p>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、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</u> <u>등에관한법률</u>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</p> <p>④、⑤ (생략)</p>	<p>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</u> <u>등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</p> <p>④、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후생 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